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142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아람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16.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2. 6. 1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의 대출금

- 1) 주식회사 D은 2012. 3. 2. C에게 70,000,000원을 상환기일 2017. 3. 5., 대출이자율 ‘3개월CD금리 + 연 1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 2) 주식회사 D은 2014. 4. 17.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4. 30.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3)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36477호로 위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2. 2. 위 법원으로부터 65,702,594원과 그 중 50,439,681원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E 주식회사의 대출금

- 1) E 주식회사는 2012. 3. 30. C에게 32,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연 24.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 2) E 주식회사는 2014. 9. 29.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21.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 3)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258590호로 위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5. 12. 위 법원으로부터 27,601,073원과 그 중 18,046,299원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상속재산분할협의

- 1) C의 모친 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05. 7. 1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와 C 등이 있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22. 6. 1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 1) 피고는, 피고가 C에게 2007. 5.경 1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한 변제로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양도받았을 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재산상태 및 C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 3)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22. 6. 17.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2) 한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인 C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가 상속받은 각 2/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철환